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함(안 제51조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(주서본 참조).

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언의 간결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- 개정안 제51조제1항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공공단체의료기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)을 포함하려는 것인데, 다소 장문으로 표현된 개정안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, 동일한 개정사항을 포함된 8개의 개정안¹⁾과의 통

1)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8개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.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대안)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대안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대안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대안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대안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대안)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대안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대안)]

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규정으로 수정함.

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1조(진료)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 〔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진료한다. 다만,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51조(진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의 료기관 에서----- ----- ----- --.
<u><신 설></u>	<u>1. 국가의 의료기관〔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</u>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</u> <u>2.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</u> <u>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 의료기관”이라 한다)</u>
---	--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